

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2월 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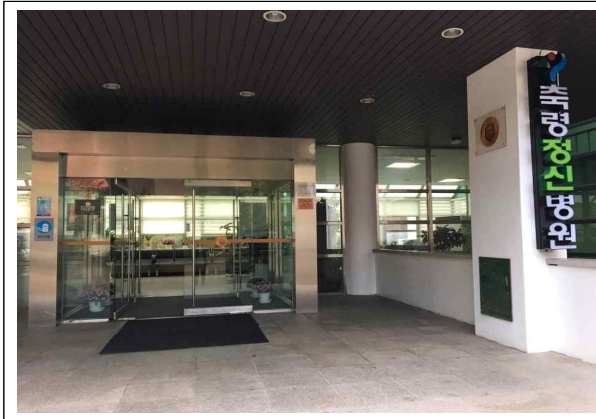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.
- 나.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매 4회차 재위탁(8회차)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
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172번길 58
- 시설규모 : 대지 6,303㎡, 건물 5,260㎡(지하1층, 지상3층)
- 개원일자 : 1997. 3월.



나.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7. 7. 1.~2020. 6. 30.)
- 위탁업무
 -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
 - 서울시 축령정신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 -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'17년 예산 : 4,145백만원(시비102, 자체4,043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다. 그간의 민간위탁 추진현황

차수	계약기간	수탁기관	비고
1차	1997. 03. 20~2000. 03. 31	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	공개모집
2차	2000. 04. 01~2003. 03. 31	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	재계약
3차	2003. 04. 01~2006. 03. 31	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	재계약
4차	2006. 04. 01~2009. 03. 31	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	재계약
5차	2009. 04. 01~2012. 03. 31	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	재위탁
연장	2012. 04. 01~2012. 06. 30	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	2개월 연장계약
6차	2012. 07. 01~2014. 06. 30	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	재위탁
7차	2014. 07. 01~2017. 06. 30	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	재계약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은 '9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온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,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정신보건법 제8조

제8조(국·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)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

제10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2.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·약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안성희 (☎2133 - 7521)